

제415회 임시회
'24. 3. 14.(목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봉순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4년 3월 4일
- 회부일자 : 2024년 3월 6일

3. 제안사유

- 물가 및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상향 조정(2024. 1. 1. 시행)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도 소액 체납세액 기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여 도세 부과징수 업무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.

※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:(기존)30만원 → (조정)45만원

4. 주요내용

-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시 일반우편으로 송달 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조정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- 현행 조례 제5조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시 서류송달의 방

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소액 체납 세액 기준에 준하여 일반우편 발송 세액 기준을 3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.

- 상위법령의 소액 체납세액 기준이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조례의 일반우편 발송 세액 기준도 이에 준하여 상향 조정하는 것은 도세 부과징수 업무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.